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0가단515359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황정규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곤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민수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제4027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3. 11. 같은 법원 접수 제491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6. 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6. 접수 제4027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1. 접수 제491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 11. ‘망인이 2018. 12. 30. 원고로부터 51,532,266원을 변제기를 2019. 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한편 망인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이 사건 아파트를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6. 2. 23. 자신의 소유 1/2지분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16. 2. 26.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 B은 2016. 3. 11. 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 외에 충남 태안군 소재 논과 창원시 소재 임야의 각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밖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라. 망인은 2019. 7. 2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2, 갑2호증,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 B과 전득자인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까지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취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살피건대, 갑11호증의 1, 갑13호증의 1 내지 3, 5, 갑14호증의 1 내지 3, 갑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망인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연주단체(E)의 총무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여 왔는데, 2012년경부터 위 연주단체의 공금을 수회에 걸쳐 자신의 거래처 등에 임의로 송금한 점, 망인은 2019. 1. 위 연주단체 측에 유용한 금액이 49,732,266원임을 인정한 점, 또한 망인은 2017년도 송년회 비용 180만 원도 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액 51,532,266원은 위 49,732,266원과 180만 원의

합계와 일치하는 점, 한편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는 위 연주단체의 회장이었고, 망인이 실제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돈을 빌렸다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위 연주단체가 망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금유용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당시 회장이었던 원고가 양수하고 망인이 이를 승낙하는 취지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앞서 본 것처럼 망인의 공금유용이 2012년경부터 시작된 이상 위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 외에 충남 태안군 소재 논과 창원시 소재 임야의 각 일부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을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 충남 태안군 소재 논은 11,974,977원, 창원시 소재 임야는 23,584,600원으로 그 가액의 합계가 35,559,577원에 불과하였음이 인정되고 그 가액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와 크게 다르다고 볼 만한 자

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망인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부족한 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 내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로 인하여 망인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망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가)취득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자신들이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갑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F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망인을 대신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매매예약 당시 망인의 다른 채권자를 해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B은 망인을 한정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도 다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 한정상속인인 피고 B의 다른 고유재산에 대해서 망인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를, 전득자인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정

별지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동 제11층 호

[1등의 건물의 표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 서울 서초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7㎡

